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7
----------	------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제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7. 6. ~ 2017. 7. 26.),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조 또는 제6조”를 “제5조 또는 제8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분	허가기준
공통사항	1.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3.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배치기준·저장설비기준·부대설비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가)·2)다)·5)가)·5)나)에 따른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6호 및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존업소의 냉동능력 범위에서 시설변경은 제외한다.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1. 시설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가목1)가)와 나), 같은 목 2)라), 같은 목 5)나)와 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3호 및 [별표2]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p> <p>[별표] 허가기준(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80%;">허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공통사항</td> <td>(생략)</td> </tr> <tr> <td>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td> <td>1. (생략).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어야 한다. 3.(생략)</td> </tr> <tr> <td>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td> <td>(생략)</td> </tr> <tr> <td>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td> <td>1. (생략) 2. (생략)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5호 및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td> </tr> <tr> <td>고압가스 냉동제조</td> <td>(생략)</td> </tr> <tr> <td>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td> <td>(생략)</td> </tr> <tr> <td>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td> <td>(생략)</td> </tr> </tbody> </table>	구분	허가기준	공통사항	(생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생략).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어야 한다. 3.(생략)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생략)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생략) 2. (생략)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5호 및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생략)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생략)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생략)	<p>제1조(목적) ----- ----- ----- 제6조제2항 ----- ----- -----</p> <p>제2조(정의) ----- ----- ----- 제5조 또는 제8조 ----- -----</p> <p>[별표] 허가기준(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80%;">허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공통사항</td> <td>(생략)</td> </tr> <tr> <td>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td> <td>1. (생략).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어야 한다. 3.(생략)</td> </tr> <tr> <td>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td> <td>(생략)</td> </tr> <tr> <td>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td> <td>1. (생략) 2. (생략)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6호 및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td> </tr> <tr> <td>고압가스 냉동제조</td> <td>(생략)</td> </tr> <tr> <td>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td> <td>(생략)</td> </tr> <tr> <td>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td> <td>(생략)</td> </tr> </tbody> </table>	구분	허가기준	공통사항	(생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생략).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어야 한다. 3.(생략)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생략)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생략) 2. (생략)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6호 및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생략)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생략)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생략)
구분	허가기준																																
공통사항	(생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생략).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어야 한다. 3.(생략)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생략)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생략) 2. (생략)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5호 및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생략)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생략)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생략)																																
구분	허가기준																																
공통사항	(생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생략).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어야 한다. 3.(생략)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생략)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생략) 2. (생략)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6호 및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생략)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생략)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단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임

3. 미첨부 사유

상위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
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없음

4. 작성자

맑은환경과 조재현 (2286-6358)

< 관 계 법 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2015.12.30.개정 >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결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 2015.12.30.개정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 2015.12.30.개정 >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1. 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0. 19. / 성동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17. 10. 20.
- 다. 상정일자: 2017. 10. 31.
(제234회 임시회 개최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 가.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 나. 제안이유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별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제8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7. 6. ~ 2017. 7. 26.),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 다만,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5년 1월 28일 자로 전부개정되고 2015년 7월 29일 자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